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15
------	------

2021.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0일, 황규복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3.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규복 의원)

1. 제안이유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전문 예술인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의 기준 일부를 기존의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제3항제3호).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개정안(안 제32조)은 시장이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할 때 기존의 공연이나 전시 및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지원 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선하는 것임.
- 2021.1.5 「대통령령」(제31379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외 27개 법령이 일괄 개정되었음. 이는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음.
- 이 같은 대통령령 취지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시 인적·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실적 요건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실적’을 ‘능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정관, 고유번호증 사본,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32조에서는 시장이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인·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1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황규복 의원(1명)
찬 성 자: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박기열,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이영실, 이정인, 이종환,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인법
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의 기준 일부를 기존의 공
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가 지정·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제3항
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을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u>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u></p> <p>4.~6. (생 략)</p> <p>④~⑤ (생 략)</p>	<p>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u></p> <p>4.~6.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